

## 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23. -----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 8. 24.  
다. 상정일자 : 2000. 10. 28.(제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상정, 원안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교통행정과장 정석환)

행정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주차장 이용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대주민편의와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주차장이용 제한사유중 종전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나.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중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불평등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10조3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 개정건은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제한과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미리징수등 우리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생활민원중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규제조항을 과감히 발본색원,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대민편의을 제고하고
- 지금까지의 잘못적용된 각종법령과 제도, 관행을 보완정비함으로써 행정규제 개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일용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